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1. 국토교통부와 고양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및 2025년도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

** (차등지급) 기준소득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2.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

나. 지정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이하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및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국가데이터처 발표 자료 기준 : 전년도(20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6,474,708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¹⁾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²⁾액

1)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법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2) 재산의 소득환산 : 승용차 재산, 토지, 주택·건축물,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등

※ 소득은 전년도 소득 전체를 월평균으로, 환산 대상 재산(금융·부동산 등)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공공기관 공시재산은 공시일)

3.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26. 5. 22.(금) 부터 6. 22.(월)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031-8075-3149)

4.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2.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부.

고 양 시 장

2026년 5월 22일